# 미화도급계약서

(주) I.P.S



## 용역청소계약서

도 급 인 (갑) - 소 재 :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

상호: (株)아이피에 🚁

대 丑: 代表理事 李 鎔 漢

수 급 인 (을) - 소 재 :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51-17

상호 : 세청개발

대 표 : 이 청 환

발주자를 "갑"이라 칭하고, 용역업 세청개발 "을"이라 칭하여 "갑"이 소유하는 건물의 청소 용역에 관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다.



- 제 1조 (청소용역 계약) "갑"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"을" 은 아래 각 조항에 준하여 성실히 청소 업무를 이행할 것을 합의 한다.
- 제 3조 (지불방법) "갑"의 청소의 대가로 지불키로 계약된 일정금액을 매월 일에 청구하여 매월 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

## 제 4조 (계약기간)

- 1. 용역청소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/년 월/일 부터 200 그 년 7 월 3/ 일까지 1년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"갑"또는 "을"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 해약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. (다만,계약금액은"갑""을"협의 인상 조정한다.

#### 제 5조 (계약의 해지)

- 1."갑"은"을"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① "을"이 파산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
- ② "을"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
- ③ "을"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
- ④ "을"이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. "갑"의 파산,경영상 이유등의 사정에 의하여 30일 이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- 3. "갑"과 "을"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- 제 6조 (물자 공급) 청소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"을"이 공급하며 장비 및 기타 비품은 상호 협조하에 공급한다. (단, 청소로 인한 전기료,수도료는 "갑"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)
- 제 7조 (신상 문제) "을"은 청소 종업원의 신원을 보장하고 업무 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제반사고에 대해 "을"은 모든 책임을 지며 "갑"은 하등의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.
- 제 8조 (변상 복구) "을"의 종업원이 작업 수행시 "갑의 건물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중대한 도난 및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명백히 인정 될 시에는 응대한 변제를 "을"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 (단, 불가항력에 의한 것은 "갑"과 "을"의 합의하에 결정하는것으로 한다.)
- 제 9조 (업무 협조) "을"의 종업원은 항상 "갑"의 각 부서 책임자와 작업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하며, "갑"의 청소 작업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구할시 "을"의 종업원은 수시로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(급 여)

- 1. "을"은 "갑"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료중 적정한 직접노무비를 청소 원에게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철저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2. "을"이 임금 체불시에는 "갑"은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료로 청소원의 급여를 직접 지불한다.

- 제11조 (보안 유지) "을"은 "갑"의 건물내의 기밀 유지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안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"을"이 책임을 진다.
- 제12조 (해 약) 용역계약의 유효 기관 내라 할지라도 "을"의 명백한 하자 및 청소 불량으로 인하여"갑"이 그 취지를 "을"에게 사전 통보하여 (1개월 전) 동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.
- 제13조 (계약의 발효) 이 계약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14조 (해석 및 분쟁의 해결) "갑"과 "을"사이에 계약조항 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 "갑" "을"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"갑"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제 15조 (합의관할) 이 계약서에 관한 합의 관할을 해당 관할 법원으로 한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작자 서명날인 한 후 "갑" "을" 각 1통씩 보관한다.



계약체결일 200 / 년 👉 월 / 일

"간" :

京畿道平澤市 芝制洞 33 (株) 이 이 피 에 八大理事 李鎔漢

"을": 125-14-41082

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51-17

세 청 개 발

이 청